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4 선고 2020가단2304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김형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5. 7.

판 결 선 고 2021. 6. 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“이 사건 아파트”라 한다.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3. 8. 체결된 증여계약을 82,723,789원의1)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2,723,7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과 C의 피고에 대한 증여

원고가 C에게 2011년 27,000,000원, 2015년 51,000,000원을 각 대출하고 2018년 장기분할상환전환대출로 전환하여 2020. 3. 25.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액이 72,427,136원에 이르렀고 그중 원금은 61,409,779원이며 지연이율은 연 15%인 사실, C와 피고는 부부로서 2014. 5. 14.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/2 지분으로 공유해 오다가 2017. 3. 8. C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, 2017. 3. 14. 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, 제2호증의 1 내지 4, 제3호증의 1 내지 4, 제4호증,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.

2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갑 제6호증의 1, 을 제1호증의 2, 제2호증의 1 내지 5, 제3호증의 1, 2, 제4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2004년부터 D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현재는 지점장인 사실, 피고와 C는 2008년 5월 혼인하였고, 그 무렵 인천 E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90,000,000원을 피고의 저축과 대출 약 40,000,000원 및 30,000,000원, 친정 지원 약 20,000,000원으로 조달한 사실, 2010년 5월 인천 F아파트로 이사할 때 임차보증금은 140,000,000원이었고 늘어난 보증금 50,000,000원 중 32,000,000원을 피고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, 2) 2012년 5월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170,000,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차액 30,000,000원 역시 피고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, 피고와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매매계약은 2014. 3. 5. 체결되었는데 매매대금은 320,000,000원이고, 그중 170,000,000원은 반환받은 임차보증금, 90,000,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조달한 사실, 나머지 60,000,000원은 저축 등으로 마련하였는데 약 45,000,000원이 피고 자금, 약 15,000,000원이 C 자금이었던 사실, 피고는 2020년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은 거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했다고 보아야 한다. 더구나 갑 제6호증의 2,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0. 10. 8. G은행으로부터 27,200,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0. 10. 11. C에게 29,540,000원을 송금하고, 2015. 5. 29. 원고로부터 20,000,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C에게 20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, C가 2010년 5월 보증금에 18,000,000원을 보탬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환수한 결과가 되고, C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에 보탠 약 15,000,000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된다. C도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하기는 했을 것이나,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나 유지에 C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.

한편 이혼소송이 비록 2020년에 제기되기는 하였으나, 위와 같은 가정경제패턴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와 피고는 이미 C의 방만한 재정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오던 중 이혼을 협의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증여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증여는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함이 마땅하고,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박우중

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부평구 H에 있는 I아파트 J동

(도로명 주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K)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2층 아파트

지1층 25.76㎡

1층 367.738㎡

2층 내지 22층 각 440.914㎡

2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인천광역시 부평구 H 대 87555.1㎡

3.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 L

건물내역: 철근콘크리트구조 84.98㎡

4. 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종류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: 87555.1분의 53.7605. 끝.

1) 72,427,136원과 그중 61,409,779원에 대하여 2020. 3. 26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

2) 나머지 18,000,000원(= 50,000,000원 - 32,000,000원)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는

불분명하다.